

의안번호	2205844
의 퇴 인	소병훈의원
회 답 일	2025.02.16.
추 계 번호	24C535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5,000만원, 2030년 4억 5,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9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450	—	—	450	—	900	1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수급추계센터)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의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신설)	재량규정
2	안 제13조의7 (응급의료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3조의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 현행법에 따른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년)은 취약지 응급의료서비스 기능 정립을 위한 모델, 취약지 신속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확충 등 개정안에 따른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일부 내용을 이미 반영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범위 확대의 경우도 기존 연구용역비(9,900만원, 2022년 기준)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13조의7 (응급의료 실태조사)	○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므로,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응급의료 실태조사(안 제13조의7)
 -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수행하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태조사”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준용하여 연구용역비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응급의료 취약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별 응급의료 인력, 병상, 시설 등의 항목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별 보건의료와 보건인력자원의 이용행태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보건의료실태조사’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 사례를 준용함
- 추계 결과, 추계 첫해인 2026년과 2030년 각각 4억 5,000만원 등 총 9억원 소요
 - 추가재정소요는 하위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실태조사 세부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법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과 통합 추진될 경우에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표 2]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실태조사(안 제13조의7)	450	-	-	450	-	900	1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